

제420회 임시회

'24. 9. 4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4년 8월 23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6일

3. 제안사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대상자인 도내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에 다자녀가구(2자녀 이상)까지 추가하여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등 더 많은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(안 제5조)
  - (현행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 - (변경) 65세 이상인 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구(2자녀 이상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제정된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의 내용 중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난 해 1월,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‘도내 65세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, 장애인’으로 확대한 데 이어, 이번 개정안에서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까지 포함해 보다 많은 도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제적 치료를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도민의 의료복지 증진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.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5조는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함)를 확대하려는 것임.
  - 현행 조례에서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자격 및 대상자를 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’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‘다자녀가구(2자녀 이상)’를 포함하도록 함.

- 이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수가 현행 455,923명에서 810,760명으로 확대되었음.

※ 대상자 확대 : (현행) 455,923명 → (개정안) 810,760명

현 행	개 정 안
① 65세 이상 노인(330,884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30,884명)
② 기초생활수급자(47,06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7,061명)
③ 차상위계층(25,782명)	③ 차상위계층(25,782명)
④ 장애인(45,562명)	④ 장애인(45,562명)
⑤ 국가유공자(6,634명)	⑤ 국가유공자(6,634명)
	⑥ 다자녀가구(2자녀 이상) (354,837명)

- 대상자의 확대는 충북도 내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용자지원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함.
- 특히,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는 저출생의 위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 됨.
- 다만, 본 조례를 통한 지원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 중에서도 특히, 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도지사가 합의하여 선정한 지원 대상 질병\* 에 대한 수술(시술)비용에 대한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자금 미상환금에 대한 보전비(1인당 대출한도 50~300만 원, 3년 무이자 상환)로 한정되어 있음.

- 이에 해당 질병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대상자들이 느끼는 실효성이 감소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를 통해 지원 금액 및 대상 질병 확대 등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\* 대상수술 : 14개 수술(시술)

- 임플란트, 슬·고관절 인공관절, 심·뇌혈관, 척추, 치아교정, 암 질환, 소화기(담낭·간·위·맹장)질환, 호흡기질환, 산부인과질환, 골절질환, 비뇨기질환, 안과질환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
- 다만, 단순히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수술(시술) 질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